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670호 2024. 4. 3.(수)

조 례

경상남도 조례 제5614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경상남도 조례 제561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경상남도 조례 제561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경상남도 조례 제5617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 조례..... 6

경상남도 조례 제5618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

경상남도 조례 제561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경상남도 조례 제5620호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16

경상남도 조례 제5621호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경상남도 조례 제5622호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경상남도 조례 제5623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경상남도 조례 제5624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경상남도 조례 제5625호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경상남도 조례 제562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경상남도 조례 제5627호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32

경상남도 조례 제5628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34

규 칙

경상남도 규칙 제3377호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36

조 례

경상남도 조례 제5614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경상남도 조례 제561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경상남도 조례 제561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경상남도 조례 제5617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 조례..... 6

경상남도 조례 제5618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

경상남도 조례 제561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경상남도 조례 제5620호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16

경상남도 조례 제5621호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경상남도 조례 제5622호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경상남도 조례 제5623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경상남도 조례 제5624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경상남도 조례 제5625호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경상남도 조례 제562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경상남도 조례 제5627호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32

경상남도 조례 제5628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34

규 칙

경상남도 규칙 제3377호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36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14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회공헌 인증”을 “사회공헌 인증, 모범장수기업 인증”으로 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표창 규정」, 「경상남도 포상 조례」 및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쟁력 강화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활동 및 각종 공모사업 관련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기업애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 방문, 온라인·전화 상담,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전문가 상담회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1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폐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장기 재직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안식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1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6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행정과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
-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제3항 중 “영 제11조제6항”을 “영 제11조제7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영 제6조”를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17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 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유형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개발·운영
 - 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채용 조달
 -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 2.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3.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4.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 5. 맞춤형 일자리
- 6. 문화·예술·체육활동
- 7. 자조(自助)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평가
- 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자문) ① 도지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18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그 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완료지역”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 2. “사후관리”란 완료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3.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지원·사전검토 등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빈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지원 및 조사연구·모델개발·정책제안 등
8. 주민협의체 지원
9.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및 자문
10. 그 밖에 시·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준비)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제14조(공모형 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4.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자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모니터링평가단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시행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장경험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로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사로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기준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사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도시재생사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1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조(중전의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의 국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 1명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
5. 관련 시민단체·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6.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⑨ 위원장은 해당 안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⑩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⑪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0호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도·시·군·「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주거복지 실현

- 2. 입주자의 자활 증진
-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 및 목표
- 2.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 3.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 방안
- 4.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 5.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
- 6.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 7. 입주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8.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 9.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시행계획의 수립
- 2.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 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13조(지원절차 등)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 ①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1.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 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1호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전통한지”란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4. “한지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수출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한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 등 한지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한지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3. 한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지산업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한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한지 원재료의 공급 지원

4. 한지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공

5. 한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6.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의 설치·운영

7. 전통한지 보존

8.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지 및 한지제품 우선 사용과 구매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홍보물 제작 등 필요한 경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등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 출자출연 기관, 도내 소재한 공공단체,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한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지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2호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일 현재 계속하여 도내 1년 이상 거주한”을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개월”을 “9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3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조(자문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
-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 2. 지역경제·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4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이”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각목”으로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를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위한”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가목 중 “1명 이내”를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반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7조 중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경상남도 시·군 관내”를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을 “다만, 해당 시·군에서”로, “경상남도 관내”를 “경상남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5호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을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으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지역 농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 1. “먹거리”란 모든 음식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3. “지역 먹거리”란 먹거리 중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를 “도민에게 먹거리가 우선 지원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을 “먹거리 기본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먹거리정책”을 “먹거리 정책”으로,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론회를”을 “토론회 등을”로 한다.

-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 2. 분야 및 단계별 과제, 추진목표
 -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전담부서 운영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도지사”로, “심의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먹거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본권 관련”을 “관련”으로, “실·국장”을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도민과”를 “먹거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4. 그 밖의 먹거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개최함을 원칙하고”를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통보”를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회하고”를 “개회하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 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회 개최 이후 지속적인 환경경남의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한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을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 환경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환경정책 연구, 환경보전 및 환경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환경재단”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을 “경상남도 환경재단”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중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생태관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환경 관련 행사 개최
- 6.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7.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모델 개발·확산에 관한 사항
- 8.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9.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4. 자산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 운영
-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8. 예산과 회계
- 9. 정관의 변경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
-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도”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사업, 정관, 이사회 운영, 직원 임명, 사업수탁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통폐합되는 기관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재단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통폐합되는 기관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폐합되는 기관에 재직하던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은 재단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 범위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과 제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7호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시행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된 하천공사에 대한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이력관리 체계)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직접 시행한 하천공사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하천공사를 포함한 제5조제2항 각 호의 모든 사업 등에 대하여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경상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경상남도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의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제7조(이력관리 공개) 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628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의안의 발의 및 상정)”을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책자문단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 정책·제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단의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구성, 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에 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단으로 본다.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4년 4월 3일

● 경상남도 규칙 제3377호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도지사는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의 법률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의 고문 및 자문 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5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
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
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관련 서류
4.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책임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
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제6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
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을 통보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
임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4.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3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제14조(변호인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인)</p>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표】

적극행정 추진공무원 법률지원금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내 용	지 급 기 준	
		착수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승소비율이 50% 이상 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항고소송 등 비재산권 목적의 소송물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해 5천만원 구간 적용	1,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5,000,000원 이내 7,000,000원 이내 8,000,000원 이내	
	3. 상고심·환송심 ○ 본안심리	1심 본안사건에 준함 (단, 동일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	
형사사건 ※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함	1. 개인 단독사건	3,000,000원 이내	
	2. 다수 관련사건	4,000,000원 이내	
	3.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6,000,000원 이내	

구분 소송별	내 용	지 급 기 준
	1. 인지대	실 비
	2. 송달료	실 비
그 밖의 소송비용 (공통경비)	3. 감정비, 검증비	실 비
	4. 출장여비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5. 그 밖의 비용	실 비